위메프·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

2024. 8. 7.

금 융 위 원 회 중소벤처기업부 금 융 감 독 원

순 서

Ι.	그간의 논의경	<u> </u>
----	---------	----------

- Ⅱ. 지원내용 2
 - 1.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2
 - 2.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3

Ⅲ.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------4

Ⅰ. 그간의 논의경과

□ 논의 진행 경과

7.10 대금 미정산 사례 발생

7.22 판매자→소비자 피해 전이

7.24 환불 지연 사태로 상황 악화

- ▶ 위메프 입점업체가 대금 💛 ▶ 티몬,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🖒 ▶ 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이탈 미정산 관련 게시물 등재
 - - →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 취소 ▶ 현장 환불 절차 착수(7.25~26)
- ㅇ (문제 발생) 큐텐* 계열사인 위메프·티몬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 발생(7.10)
 - * (대표) G마켓 창업자 구영배 / (주요 계열사) 위메프, 티몬, 인터파크커머스
 -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7.31일까지 정산기일*이 旣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.745억원
 - *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·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~60일 후
 - 다만, 정산기한이 남은 미정산된 6~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~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
- 이 (대책발표) 7.25일 문제 본격화 이후 관계부처는 소비자·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총력지원하기로 하였고
 - 7.29일 5.600억원+@의 정산지연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포함한 '위메프·티몬 대응방안' 발표
- 이 (긴급대응반 가동) 7.29일 전 금융권 금융지원 회의* 이후 관계 기관은 기급대응반을 통해 금융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
 - * 금융위 사무처장,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공동주재, 全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참석
 - 7.30일, 8.1일 등 긴급대응반 회의를 통해 지원요건을 확정
- ▷ 정산지연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을 금주부터 신속 시행

Ⅱ. 지원내용

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지원

①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대출·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

- (대상기업) 티몬·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(5월~) 중 매출이 있는 기업
- 이 (대상대출) 대상 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유한 全 금융권* 대출 및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중진공, 소진공, 신·기보, 지신보) 대출
 - * 은행,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여신금융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)
 ※ 주택담보대출,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제외
 - 시행일 이전에 실행되었으며, 시행일 기준 원리금 연체*, 자본잠식, 폐업 등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
 - * 7월 10일 이후 시행일까지 기간에 부실발생시 만기연장, 상환유예 지원
- (확인방식) 티몬·위메프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
 - *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 확인가능
- (지원내용) 기존 수해 및 재난 피해^{*} 등에 준하여 회사별 자율지원
 - *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서천시장 화재피해 지원('24.1월), 수해피해가계 지원('24.7월) 등에도 금융권이 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는 3개월~1년 간 지원
- (시행시기) 8.7일부터 全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창구 통해 시행

②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(신한, 국민, SC은행)

- (대상기업) 티몬·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
- (대상대출) 대상 사업자·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
- (지원내용)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
- (시행시기) 8.7일부터 신한·국민·SC은행 창구 통해 신청

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

□ [기은-신보] 3.000억원+@의 협약프로그램

- (총 규모) 3,000억원 (향후 필요시 증액)
- (기업당 한도) 미정산금액(금감원 확인), 30억원 한도
 -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
 - 3억원~30억원은 기업당 한도사정으로 금액제한 가능
 - ※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-CBO, 기타 일반보증상품을 통한 지원 안내
- (방식) 신보에 특례보증 신청 → 기은에서 대출지원
- (보증료·보증비율) 3억원 이하 0.5%(최저보증료) / 3억원 초과 1.0% 보증비율 90%
- (금리) 최저 3.9%~4.5%*
 - * 일반대출 대비 1%p 이상 최대한의 우대금리 제공(신용등급별 차등)
- (시행시기) 8.9일부터 신보에서 특례보증 사전신청*
 - *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8.14일 개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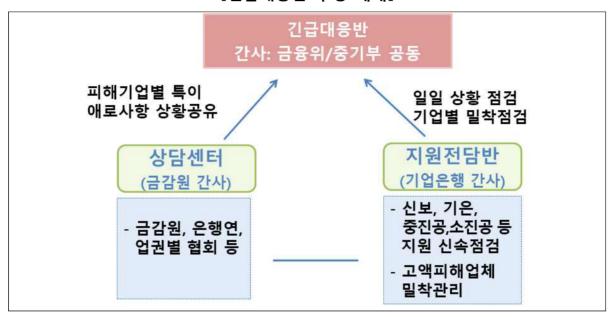
□ (소진공, 중진공) 2,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- (총 규모) 2,000억원
- (한도) 미정산금액(금감원 확인), 소진공 1.5억원/중진공 10억원
 -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內 최대공급
 - 중진공은 재해자금 수준의 심사 최소화를 통해 신속 지원
- ㅇ <mark>(방식)</mark> 중진공·소진공에 자금신청(누리집 및 지역본부·센터) → 집행
- (금리) 소진공 3.51%, 중진공 3.40% ('24.3분기 기준)
- (시행시기) 8.9일부터 각 기관을 통해 자금 신청·접수

Ⅲ. 긴급대응반 운영 계획

- □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토록 긴급대응반 중심 효율적 관리
- 금융위·중기부, 금감원,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로 긴급대응반 구성 및 수시로 긴밀한 협의*
 - * 7.30일, 8.1일 두 차례 실무협의 개최

【긴급대응반 구성 체계】



- (상담센터) 기관별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(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총괄*)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컨설팅 제공
 - * 각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내용을 기관간 공유하고, 지원프로그램, (필요시)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등 지원
 - ※ 정산지연 금액에 대한 이견 등 발생시 상담창구·지원전담반→ 금감원 통해 재확인
- (지원전담반)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기업은행, 신보, 소진공,
 중진공 등 각 기관에 지원전담반을 두고 특례자금 중복지원 방지
 - 피해금액이 일정규모(예: 1억원)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워

※ 주요 추진 일정 요약

조치사항	추진시기	부처·기관
▶ 정산지연 피해기업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	8.7일	전 금융권 정책금융기관
▶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	8.7일	취급 3개은행
▶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청접수 개시	8.9일	중진공, 소진공
▶ 기은-신보 협약프로그램 신청접수 개시(사전신청)	8.9일	신보, 기은
▶ 긴급대응반 중심 각 기관별 전담반 대응, 일정규모 이상 피해업체 밀착관리	지속	금감원 정책금융기관

참고 1

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내용

□ 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지원

- 금융권*(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, 보험사)은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(3개월~1년) 대출원리금 만기연장, 상환유예, 분할상환 등을 지원

<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내용 예시 >

< 은행권(예시) >

ㅇ 全 은행 :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

o 국민은행, SC제일은행 : 이자 캐시백, 이자 면제(최대 3개월) 등

< 상호금융업권(예시) >

ㅇ농협 : 원리금 상환유예(최대 12개월) 지원 등

ㅇ신협 :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6개월) 지원 등

ㅇ수협 :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(만기이내) 및 만기연장 지원 등

ㅇ산림조합 :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6개월) 지원 등

< 금융감독원,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>

금융감독원						
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 종합지원센터	☎ 1332 (내선 6번)	강릉	a 033-642-1904			
부산 울산	1 051-606-1700,1701	경남	1 055-716-2330			
대구 경북	1 053-760-4000	제주	1 064-746-4200			
광주·전남	1 062-606-1600	전북	☎ 063-250-5000			
대전·세종·충남	☎ 042-479-5151,5154	강원	1 033-250-2800			
인천	1 032-715-4890	충북	1 043-857-9104			
산업은행	1 1588-1500	신보중앙회	1 1588-7365			
수출입은행	1 02-3779-6254	은행연합회	1 02-3705-5000			
기업은행	1 1566-2566	생명보험협회	1 02-2262-6600			
신용보증기금	1 1588-6565	손해보험협회	1 02-3702-8500			
저축은행중앙회	1 02-397-8688	농협중앙회	1 1661-2100			
여신금융협회	1 02-2011-0700	수협중앙회	1 1588-1515			
신협중앙회	1 1566-6000	산림조합중앙회	1 544-4200			
새마을금고중앙회	1 1599-9000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1 811-3655			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1 1357	기술보증기금	1 544-1120			

참고 2 급용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가이드라인

- ※ 본 가이드라인은 예시로서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본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.
- □ (지원 대상) 티몬·위메프의 거래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 ☞ '24년 5~7월 중 티몬·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
 - (피해확인방법) 피해사업자가 제출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결제 내역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
 - 신청사업자는 정산지연 피해사실 확약서*를 제출
 - * 작성 내용 및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

※ 증빙서류 확인방법(예시)

- 티몬·위메프의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5~7월 중 결제 내역 출력물을 확인
- 티몬·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번호 출력물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
- □ (적용대상대출)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 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(보증기관 동의 필요), 외화대출 등 포함
 - '24.8.7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
 - * 단, 일부 인터넷은행의 보증부대출은 전산준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시행
 -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·협약
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 -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**파생상품**(금리·통화스왑 등) **관련 대출**(대지급금)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워대상에 포함
 - 시행일 기준 원리금 연체*, 자본잠식, 폐업 등 부실이 발생
 하지 않아야 함
 - * 7.10일 이후 시행일까지 기간에 부실발생시 만기연장, 상환유예 지원
- ※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, 이자선취대출, 한도대출 등은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- □ **(지원 내용)** 상환방식(일시/분할)에 상관없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☞ 수해 및 재해 재난 지원에 준하여 지원
 - o 거치식 대출상품의 **거치기간 연장 포함**
 - o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
 -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(다만,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)
- □ (시행시기) '24.8.7.(수)부터 각 기관 영업점을 통한 신청접수 개시
- □ **(시행기간)** '24.8.7.(수)부터 1년 간('24.8.7. ~ '25.8.6.)
- □ (기타) 본 지원방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름